라트비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1. 국명 : 라트비아 공화국(Republic of Latvia) 2. 수도 : 리가(Riga, 64만명) 3. 인구・면적 : 196만명(2016년), 64,589㎢(한반도의 약 3/10) 4. 공용어 : 라트비아어, 러시아어 5. 1인당 GDP : 14,630불(2016년) 6. 독립일 : 1991. 5. 4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 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의원내각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Latvia

2. 연혁

○ 1922. 2. 15. 첫 번째 헌법 제정

○ 1991. 9. 6.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

○ 1996. 6. 5. 헌법에 헌법재판소 규정 신설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

○ 1996. 12. 9. 헌법재판소 설립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Chairman)과 부소장(Deputy Chairman) 1인을 포함한 7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3인은 국회의원(100석) 10인 이상의 추천으로, 2인은 내각의 추천으로, 2인은 대법관회의의 추천으로 국회(Saeima)의 승

인을 받아 임명

- 대법관회의는 법관 중에서만 후보자를 선출

○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, 정년은 70세

○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3년의 임기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(재판관 전원의 과반수)

○ 재판관 자격 :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, 법조인·법학 대학교수 또는 법학 분야 학술연구원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40세 이상의 라트비아 국민

- 재판관은 정치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으나 교수직과 연구직 외의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됨

4. 권한

가. 규범통제

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

② 라트비아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협약(국회의 동의 전이라도)의 위헌여부심판

③ 법규명령의 상위규범에의 합치여부심판

④ 국회, 내각, 대통령, 국회의장 및 총리가 제정한 명령(행정규칙 제외)의 법률에의 합치여부심판

⑤ 내각의 위임에 의해 장관이 발한 명령의 위헌여부심판

⑥ 국내법령의 라트비아가 당사자인 국제협약(헌법에 배치되지 않는)과의 합치여부심판

나. 헌법소원심판

- 상위규범과 합치하지 않은 법규명령의 적용으로 헌법상 기본권

이 침해된 경우 개인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

5. 심리 및 결정

○ 사건이 접수되면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(Panel : 1년 임기로 재판관 전원의 과반수로 선출)에서 1개월(복잡한 사건의 경우 2개월까지 연장 가능) 내에 심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

○ 전원재판부는 5인 이상 재판관의 참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, 규범통제 권한 중 ⑤를 제외한 사건을 담당

○ 그 외의 사건은 3인 재판부에서 담당

○ 판결은 '찬성' 또는 '반대'만 표시하는 찬반투표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 심판대상 법령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결

○ 반대의견을 표시한 재판관은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있으나 공표는 불가

6. 기타사항

○ 재판관으로 국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통령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며, 이 때 부터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됨

- 이미 법관선서를 마친 법관이 재판관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과 동시에 임기 개시

7. 연락처

○ 주　　소 : Jura Alunāna iela 1
Riga LV-1010

Latvia

○ 전화번호 : +371 67210274

○ 이메일 : tiesa@satv.tiesa.gov.lv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satv.tiesa.gov.lv

※출처: 세계은행 웹사이트

美 중앙정보국 웹사이트

라트비아 헌법

베니스위원회 CODICES

(2017. 8. 작성)